

전문대학 RISE사업단 협의회 회칙

제정 : 2025. 12. 04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협의회는 “전문대학 RISE사업단 협의회” 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의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(이하 ‘RISE’ 라 한다)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간의 연대·협력을 통해 지역혁신과 산학협력, 현장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며, 상호간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통해 RISE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활동)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
1. 참여대학 간 RISE 사업 관련 정보 교류·협력활동
2. RISE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,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
3. RISE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
4. 초광역 단위의 협력 및 홍보 활동
5. RISE 사업 관련 정책연구, 세미나 및 교육 연수 활동
6. 기타 협의회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

제2장 회원

제4조(회원) ① 협의회 회원은 RISE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대학(교)로 한다.

② 회원대학의 RISE 총괄사업책임자(사업단장)가 해당 대학을 대표하여 협의회에 참여한다.

③ 회원대학의 RISE 총괄사업책임자(사업단장) 변경 시에는 즉시 협의회에 통보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대로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② 회원은 협의회가 진행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·협력할 권리와 정보를 공유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③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, 협의회 활동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.

- ④ 회원은 협의회가 정하는 협의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.
- ⑤ 회비를 2년 연속 미납한 경우,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장 총회

제6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- 1.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3. 운영계획의 승인
- 4. 기타 협의회 운영상의 중요 사항

제7조(총회의 구성 및 소집) ① 총회는 제4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④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2. 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
 - 3. 회원 1/3 이상이 요청할 때
- ⑤ 총회는 협의회장이 소집하며,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8조(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)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임원

제9조(임원 및 조직) 협의회에는 다음 임원을 두며, 임원의 자격은 회원대학의 RISE 총괄 사업책임자(사업단장)로 한다.

- 1. 회장: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
- 2.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
- 3. 사무국장: 회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회 사무 전반을 담당
- 4. 감사: 2인으로 구성하며,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

5. 지회장: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권역 RISE 회장을 두며, 권역별 협의회 활동을 주관한다. 단, 참여대학이 5개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임원의 선출 및 임명) ① 협의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회장의 선출 방법은 총회 15일전까지 절차를 공지한다.

② 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임명하고 총회 인준을 받는다.

③ 지회장은 별도의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선출한다.

④ 지회장 변경시 협의회에 즉시 통보한다.
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 협의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 유고 시 후임자는 잔임기간을 승계한다.

③ 제9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계속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후임 총괄사업책임자(사업단장)가 그 직을 승계할 수 있다.

④ 이사의 임기는 각 지회에서 정하도록 한다.

제5장 조직운영

제12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, 사무국을 두고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 및 제 9조의 임원으로 구성해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) ① 협의회 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 수립 변경 등 회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
2.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
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14조(사무국)** ① 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회 업무와 총회에서 위임된 RISE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- ② 사무국의 업무, 인력 등 운영 세부사항은 내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- ③ 사무국은 회비의 수입내역과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이사 및 전담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총무이사는 회장,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협의회의 회계 및 사무실무를 담당한다.

제6장 재정

제15조(회계연도)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학년도 사업기간으로 한다.

- 제16조(재정)**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, 정부·지자체 지원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회비 및 연간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.
- ③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, 교육, 연수, 세미나 및 행사 등 참가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- 제17조(지출)** ① 제16조에 의해 충당된 재정은 제5장에서 규정한 각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한다.
- ② 협의회 운영비의 집행은 청구,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전문대학 RISE 사업단 협의회 운영비 집행 지침」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18조(결산 보고) 회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협의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9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감사의 결산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- 제19조(회칙의 개정)** ① 제13조의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 발의 시 총회에 회칙의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.
- ② 상정된 회칙 개정안은 제 8조에 의하여 총회에서 심의, 의결한다.

제20조(시행세칙) 세부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의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21조(법적 지위 및 국세기본법 준수) ① 본 협의회는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 제2항에 따른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1.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를 선임한다.
2. 협의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한다.
3. 협의회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
②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,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.

③ 기타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의 승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임기의 특칙)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사업년도를 기준으로한다. 다만 2025년은 회장 선출일로부터 시작한다.

제3조(경과규정)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, 집행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제4조(해석) 본 회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의한다.